

중소기업기술개발시책

송 종 호

(중소기업청 창원지원과장)

I. 최근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현황

1. 산업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관계

- 최근 「엔저」에 의한 수출격감과 내수부진 등에 의한 경기하강은 금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(전문가들 의견)
 - 이는 환율등 외생요인과 고비용·저효율의 산업구조가 주원인이나, 우리기업도 기술개발·생산성향상보다는 설비확장에 주력했음을 지적
- 산업기술의 급변과 지원제도의 개편 불가피
 - 기술의 첨단고도화(수직적), 이업종간 융합화(수평적), 수명주기 단축(시기적)으로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기술애로는 종래에 비해 배가 추세
- 이에 따라 제품의 성능·기능·품질 또는 디자인등 기술적 우수성이 없거나 특징이 없는 제품은 시장경쟁에서 도태불가피
- WTO체제의 출범으로 직접보다는 간접형태의 지원체제로 개편추세
- 예) 기술개발자금의 정부출연비율 상한선 : 총 개발비의 50%-75%
- 이러한 대내외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가장 바람직
 -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상, 모든 경쟁요소를 완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부·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임.

2.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현황 및 문제점

가. 기술력 현황

- 기술수준을 단순 계량화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우나,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3%, 국내 대기업의 64% 수준
- 사용기술중 포화기·쇠퇴기 기술이 71%차지
- 독자개발력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는 전체의 25%에 불과(2,022개)
- 최근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, 기술개발활동 실적은 인식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
- 기술개발투자 업체수(95) : 6,519개, 전체중소제조업체의 7.2% 수준
- 기술개발투자비율 : (94)0.41%-->(95)0.31% 0.1%P 감소

나. 문제점

-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방향성 부재 및 관련제도간 연계성 부족
 -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지원 전략부재
 - 설계·생산 및 판매까지 일관된 기술지원 체계 부족
- 기술개발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저조
 - 정부의 기술개발예산중 중소기업지원 비율은 10% 이내로 극히 미약
- 95산업기술예산 3,983억 원, 중소기업지원 액 288억 원(비율 : 7.2%)
- 중소기업 전용의 출연금은 "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자금"이 전부

- 재정자금중 중소기업 전용의 기술개발지원 자금은 없고, 대·중소기업 공히 동일조건으로 지원중(중소기업은 기술투자의 위험 부담으로 기술개발 용자금은 기피)

○ 연구인력 및 추진조직이 절대부족

- 학사이상 연구원의 중소기업취업자수 : 16,850명(국내 전체의 15%)
-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율 및 취업율도 극히 저조
 - 96년도 중소기업 배정인원 527명중 취업자수 294명 (55.8%)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: 1,856개 (중소제조업체의 2% 수준)

○ 대학·연구기관 또는 대기업간 기술협력 및 지원기반이 극히 취약

- 대학·연구기관등과 조직적인 협력체제의 부재
- 수탁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안정적인 지원 수단이 없고, 이업종간 실질적인 기술교류 활동도 저조

<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동향 >

○ 일반동향

- WTO의 출범으로 기술외적인 지원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술력향상을 위한 지원강도는 높아지는 추세
- 특히, 중소기업의 문제와 기술혁신은 경제 정책의 중점과제로 추진

○ 주요국별 동향

< 미국 >

- 중소기업에 국한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법(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, 1982)」을 운용
-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중 일정율을 매년 중소기업에게 의무지원하는 SBIR제도와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STTR 제도를 운용중

< 일본 >

- 종전의 「중소기업기술개발촉진법(85.6)」에 이어 「중소기업창조활동임시조치법(95.4)」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기술활동을 지원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하에 기술개발보조, 기술지도, 산학협동등 다양한 기술력향상사업을 운용중

< 독일 >

- 각종 기술개발보조제도 운영 및 동·서독 지역간 차등지원
- 기업연구소 소속연구원의 인건비 보조등 가장 다양한 기술지원사업을 운용중

II. 1996년도 추진실적

○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
(96. 4 월 통상부에서 이관)

- 61개 지방대학과 1,012개 인근 중소기업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960개 기술개발을 지원
- 지원자금 : 122억원(우리청 70, 시도 52)

○ 개별 중소기업에게 직접 기술개발비용을 출연하기 위한 「기술혁신개발사업」 신설 및 97년도 예산에 300억원 반영

○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추천제도 신설(4.1)

- 특례추천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신보의 기술 개발능력(25점) 평가생략
- 추천실적(96.11) : 140개 업체
 - 보증서 발급 : 56업체 182억원(70업체는 검토중, 14업체는 보증제외)

○ 국내 및 해외기업간 기술협력관계 강화

- 30대 그룹계열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 설치 : 27개
- 이업종 교류그룹 확대 :(95) 217그룹 3,439개 업체 -->
(96.11) 261그룹 4,071개 업체
- 한·일 부품산업 협력 모델사업 확대
 - 대상품목 확대 : 4개품목 --> 15개 품목
(96. 9 동경회의에서 합의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(96.5), “시험검사설비확충 5개년 계획”(96.7) 및 “기술지도 5개년 계획”(96.12) 수립 ○ 「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」 구성·운영 (96.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 : 차장(위원장), 관계부처국장, 대학·연구소 및 기업대표 19명 - 산업기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책간 조정 및 각종 지원자금 심의 ○ 대학·연구기관·지도기관과의 기술협력 기반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6개 공공연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(9.12) 등 각종 회의 20회 개최 - 「제1회 중소기업기술박람회」 개최 (11.14~18, 5일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·연구소·지도기관 등 126개 기관 및 단체 참여(국내 최초) · 3만여 중소기업에서 10만여명 참관으로 각종 기술이전 및 지도상담 - 이업종교류 전국대회(11.14~18) 및 국제이업 종 교류대회 개최 등 - 기술지도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(96.5월) ○ 각종 기술지원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12.12) - 「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협의회 운영지침」 개정보완(4.16) - 「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」 제정(중기청고시 제1996-13호) 및 1997년도 지원계획 공고(중기청 공고 제1996-117호) - 실수요자 금융인 「외화대출국산기계구입 자금」 용자대상에 “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” 을 추가(6.5,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)
--

III. 199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주요 시책

< 추진 방향 >

- ◇ 지난해에 마련한 각종 기술지원체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사업착수 및 법제정비 등을 완료토록 함.
 - 「기술혁신개발 3개년계획」, 「기술지도 5개년 계획」 및 「시험·연구설비확충 5개년 계획」의 착수
 -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등

 - ◇ 기술지원정책을 수출중소기업에 우선함으로써, 무역수지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력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해 나감
 - 「기술혁신대상제품」 지정 및 전략적 우대
 - 수출유망한 「우수기술제품만들기사업」 전개 (Package Tour 형태)

 - ◇ 「경쟁력 10%이상 높이기」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품질혁신 및 생산성 배가에 주력해 나감.
 - 100PPM, 공장혁신(Refactory) 지도사업의 추진

 - ◇ 산학연 기술지원관계를 강화하고, 대·중소기업간 지속적인 기술협력기반을 모색해 나감.
 - 산학연관련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
 - 자동화지원센터에 「기술이동실」 설치운영
 - 모·수탁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각종세제 지원등

 - 1. 21세기를 대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체계 정립
- 21세기 고도기술산업 사회에 대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97년도 시책방향을 무역수지 개선과 산업기술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함이 필요

가. 「중소기업기술력향상 종합대책」 수립

- 향후 5년간(97-2001)을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의 전략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술관련 인력·자금 및 지원제도등이 종합된 「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종합대책」 마련
 - 96.5월부터 통상산업부와 우리청 공동으로 추진방안 마련
 - 조기착수가 필요한 과제는 97년도 우리청 기술지원시책에 반영

나. 성장유망한 「기술혁신대상제품」의 선정 및 전략적 지원

- WTO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Technology Targeting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「기술혁신대상제품」의 선정 및 우선 지원

※ 일본은 85년부터 「중소기업기술개발에 관한 지침(범위)」을 제정하여 정부 및 관련단체의 각종 지원제도에 우선반영 (제정 1985. 7. 10 통산성 276호)

- 기술혁신대상제품의 선정기준 및 범위

< 선정기준 >

- 1) 수출경쟁력이 있거나,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예상되는 분야
- 2) 수입규모가 1백만불 이상이거나 기술도입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
- 3) 2-3년이내에 생산가능하거나 첨단기술의 중간진입이 필요한 분야
- 4) 성숙단계인 제품이나 기술혁신으로 신규시장이 예상되는 분야
- 5) 정부 국책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가능한 분야

< 제품의 범위 >

- 기술혁신대상제품의 범위(중분류:11개 제품)

- 기계(26), 전기/전자(27), 금속재료(12), 정밀화학(14), 섬유/염색(11), 생활용품(8), 생물산업(5), 환경/에너지(5), 서비스(3)

○ 활용방안
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 우대지원 (과제당 1.5억 원)
 - 우리청의 여타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조세·금융지원 대상에도 우선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시 반영
- ※ 향후 수출시장 및 산업기술의 흐름에 부응 할수 있도록 「기술혁신대상제품」의 범위를 2-3년마다 재조정 및 기술수준 격상 예정

다. 목표지향적 기술지원체제의 확립

- 그동안 개발에서 생산·판매까지 각종 기술 지원제도가 상호 연결성을 갖지 못하여
- 중복지원, 일회성 지원등으로 자원의 배분과 사용의 효율성 결여 및 지원효과의 극대화가 어려웠음
- 내놓을 만한 「우수기술제품 만들기」 Package Tour 사업 추진
- 수출유망한 우수제품 개발을 목표로 매년 기술수준조사를 통하여 약10개 제품을 선정 한 후 개발에서 생산·판매까지 일괄·집중 지원
- WTO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97. 1/4분기중에 「추진체제」를 마련하여 즉시 시행

2.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강화

가. 「중소기업기술지원혁신개발사업」의 추진

-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를 선정 하여 우리청 예산에서 직접기술개발 비용을 출연해주는 제도임.
- 지원한도 : 혁신기술은 1.5억 원, 일반기술은 1억원까지 지원
- 기술개발 성공시, 정부출연금의 30%를 기술료 명목으로 1년거치 5년분할 상환 (상환금은 기술개발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)

○ 97년도 운용 계획

- 지원규모 : 300억원(2,000년까지 3,000억원을 목표)
- 신청자격 :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주식 미상장의 중소제조업체 다만, S/W업체·디자인업체·연수고 보유업체 및 창업 또는 기술보유센터 입주업체는 예외적으로 포함
- 기술품질원·지방청(소)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,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
- 사업자 선정 시, 수출중소기업(수출비율 20% 이상)을 우선 선정

나. 「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」의 지속적 추진

- 지방대학과 10개 이상의 인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소요자금을 대학에 출연하는 제도임
 - 소요자금은 우리청(50%), 시도(25%) 및 기업(25%)이 공동으로 조성

○ 97년도 운용 계획

- 지원규모 : 150억원(우리청 81, 시도 69)
- 70개 지방대학과 1,200개 중소기업이 1,100개 기술을 공동개발 예정 (참여업체 선정 시 수출중소기업을 우선 선정)

○ 추진일정

- 97.1~2월 :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용 요령 및 97년도 지원계획 공고
- 2~5월 : 지방청(소)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접수
- 6월 : 컨소시엄 구성확정 및 협약체결

다. 여타 정부출연 기술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

○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에서는 산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3,983억원(95)정도의 출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의 지원비율은 7.2%로 극히 미미
- 중소기업의 담보여력 부족과 기술개발의 위험 등을 고려, 일정액 또는 비율을 정하여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토록 규정함이 필요

※ 미국은 82년부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예산 중 매년 일정율(97년 2.5%)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토록 하는 SBIR(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)제도를 운영 중(95지원액 : 6,900억원)

○ 추진방향

- 미국의 SBIR제도와 유사한 「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지원 의무비율제」를 도입(통신부 중소기업정책관실과 협의)
- 대상기관 : 100억원이상의 연구개발 출연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(통신부, 과기처, 경통부, 한전 등)
 - 97-2001년까지 10%를 시작으로 매년 5%씩 상향지원
- 97 상반기중에 각부처/기관의 년차별 중소기업 기술지원계획을 취합하여 경제장관 회의에 상정 및 필요시 법제화 추진

※ 기대효과 : 연구개발예산의 10%를 중소기업에 지원할 시 95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조성효과 가 나타남.

라.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

○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(재정자금)지원

-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자금과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여 사장되거나, 기술개발 노력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
 - 추진 방안(상반기중에 관련기관과 협의완료)
 - 각종 재정자금의 지원대상에 "기술혁신 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지원" 항목 별도 신설

→ 대상자금: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자금,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, 정보화 촉진기금, 과학기술진흥기금

○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의 추천 기준개선 및 신뢰도 제고

- 특례지원 추천 확대 : (96.11) 140개 업체
----> (97) 200개 업체
- 특례보증 추천기준 개선 및 신뢰도 제고

- 1) 수출비중이 크거나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업체는 우선 추천대상에 포함하고
 - 2) 우선추천 대상업체중 적색거래처등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는 기술신보의 별도 심사없이 보증서 발급(기술신보와 협의추진)
- 우리청의 여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기술의 사업화 도모
 - 연계대상사업 : 100PPM, 생산기술지도등 각종 기술지도사업, 우수기술제품마크 부여 등

3. 기술협력관계 증진 및 추진기반 확충

- 가. 대·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기반구축
-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「수탁기업협의회」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유도
 - 수탁기업협의회 : (96) 129-->(97) 140개
 - 기술정보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촉진
 - 30대 그룹계열 대기업의 「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」 설치 확대
 - 전담조직 설치대기업 : (96) 27개 기업 --> (97) 50개 기업
 - 대기업의 연구소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, 공정개선 및 품질개선 교육 실시
 - 대·중소기업간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 -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 소요비용 세액 공제 확대(조감법 제9조)
 - 공제율 확대(법인세) : 10/100-->30/100
 -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·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(조감법 제10조)
 - 공제율 확대(법인세) : 5/100-->10/100
 - 대기업 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근무자 확대 유도
 - 파견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등 인센티브 부여

나. 이업종 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

-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, 물류, 유통업등 전업종으로 확산 유도
 - 교류회결성 : (96) 260그룹 4,000업체 --> (97) 300그룹 4,500업체
 - 서비스업체 참여수 : (96) 376개사 (9.4%) -----> (97) 540개사(12%)

○ 이업종 교류전문가 양성 및 교육

- 교류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 : 양성교육 50명, 보수교육 100명
- 단위교류회별 「전문리더」 연수: 200명 (상·하반기 2회)

- 전국이업종 교류촉진대회(97.10), 지역이업종 교류프라자(6회)등 각종 이업종 관련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

다. 국가간 기술협력사업의 전개

- 국제 이업종 교류세미나 개최등 각종 기술 협력 발굴추진

- 일본·대만·싱가폴 주최 국제이업종 교류 회의 상호참가
- 해외 이업종 교류단체와 자매결연(5건)을 통한 기술교류 협력 강화

- 한·일 부품산업협력 모델사업의 추진업체 선정

- 자기헤드·주물·센서등 15개 품목의 모델 사업추진 업체를 선정
-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추진

- 독일·스페인·러시아·중국·베트남 등의 관계기관과 기술이전·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

○ 기타

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추진 제도등 중소기업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.